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43호

전문엔젤투자자 관리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4. 7. 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43호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중소기업청장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문엔젤투자자의 세부 규정 및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절차 등에 대해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① 전문엔젤투자실적 기준

○ 투자금액의 합계를 1억 원으로 규정

* 시행령 : 최근 3년간 창업자 등의 신주*에 대한 투자 금액의 합계(투자 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에 한함)가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함

** 엔젤큐드 신청자 581명 중 1억원 이상 투자자는 45명으로 7.7% 수준 → 연 구룡역 등에서 제안한 엔젤투자자 상위 10%와 큰 차이 없음

② 경력 기준

-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경력 보유자 등이 전문엔젤투자협회의 경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규정
 - (사)한국엔젤투자협회가 커리큘럼·수료기준 등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50시간 이상 엔젤펀딩을 수료한 자
 - * 수료기준은 (사)한국엔젤투자협회가 정하여 승인을 받되, 전체 시간의 60% 미만 출석자는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PEF 운용사 등에서 투자심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포함

③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 규정

- * **(시행령)**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의 제출 방법 및 제출 자료의 유효기간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 ① **(제출자료)** 전문엔젤 확인을 한국벤처투자(주)에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 투자확인서, 투자기업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등 필요
- ② **(자료확인)** (1) 확인 신청 → (2) 투자실적·경력 등 요건 확인(30일 이내, 1회 20일 연장가능) → (3) 전문엔젤 해당 여부 통보
- ③ **(유효기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추가 자료 제출 없이 2년간 전문엔젤투자자 자격을 부여하되,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 중 투자실적 및 경력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유효기간을 만료 →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정지
 -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의 경우 만료일 이전 1개월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만료일 익일부터 2년 간 유효기간 부여

④ (자료제출 방법) 원활한 전문엔젤투자자 의견 확인을 위해

- (사)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 한국벤처투자(주)에 자료를 접수할 수 있도록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 제도안내 및 신청서류의 단순 접수·전달 기능을 부여

3. 의견 제출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 (우편번호 : 302-70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4360, 팩스 042-472-32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 제정안 전문]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

제정 2014. 7. 0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이하 "전문엔젤투자자"라고 한다)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엔젤투자자 투자실적) 영 제2조의3제3항제1호에서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제3조(전문엔젤투자자 경력 등) ① 영 제2조의3제3항제2호바목에서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 청장의 협회를 받아 설립된 (사)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전문엔젤투자자 양성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② (사)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중소기업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청은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한다.

1. 강의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내용, 다만 총 강의 시간은 50시간 이상 일 것

2.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 다만 교육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3. 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방식(주중, 주간 등 일자별 시간표 등)

③ 영 제2조의3제3항제2호바목에서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제4조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의 신청 등) 영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엔젤투자 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개인(이하 “신청인”라 한다)은 한국벤처투자(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투자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투자한 회사의 범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5. 주주명부(신청자 등재분)
6. 이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투자계약서 사본 등 그 밖의 투자실적 및 경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5조(서류 접수 및 결과의 통보) ① 한국벤처투자(주)의 대표는 자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가 영 제2조의3제3항으로 정한 투자실적 및 경력 등을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주)의 대표는 신청인이 전문엔젤투자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서류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별지 3호 서식]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주)의 대표는 전문엔젤투자자의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산정) ① 영 제2조의3제4항으로 정한 제출자료의 유효기간이라 함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에 전문엔젤투자자로 확인서를 발급받은자가 유효기간 만료일전 1개월에서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전문엔젤투자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영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 만료되며, 이 경우 한국벤처투자(주)의 대표는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해당 신청인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방법 등) ①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한국벤처투자(주)에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사)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서 한국벤처투자(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 제출된 경우 (사)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출된 서류를 자체 없이 한국벤처투자(주)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지침의 제정) 한국벤처투자(주)의 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관리규정은 2014년 7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주소	① (-) ②		전화번호	③	
		이메일주소		④	팩스번호	

투자실적 (최근 3년 이내 창업자 등의 신주를 1년 이상 보유했거나 보유중인 투자실적)

① 피투자 기업명	② 투자기간			③ 주식수	④ 투자금액 (원)	⑤ 지분율
	취득일자	~	회수일자			
		~				
		~				
		~				
		~				
계						

경력 (상장기업의 전현직 창업자 및 임원 경력, 창투사 등의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 등)

① 소속기관	② 재직기간(또는 심사기간)			③ 최종직위	④ 담당업무	⑤ 비고
	시작일자	~	종료일자			
		~				
		~				
		~				
		~				
계						

기타 :

(자격증, 박사학위, 또는 교육과정명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기타 자격)

위와 같이 투자실적 및 경력사항을 정히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귀하

- ① 투자확인서 등의 서류
- ② 자격증 사본, 박사학위증 사본,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등의 서류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벤처투자(주)는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 그리고 투자실적 보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 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 전문엔젤투자자로 확인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인 및 투자실적을 보고하는 전문 엔젤투자자

□ 수집·이용 목적

-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 업무
- 전문엔젤투자자가 보고하는 투자실적 접수 업무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 항목

- 전문엔젤투자자로 확인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인의 생년월일 및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투자이력사항 등
- 투자실적을 보고하는 전문엔젤투자자의 생년월일 및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투자실적 이력사항 등

○ 선택 항목

- 전문엔젤투자자의 팩스번호, 근무처명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 목적 달성을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및 투자실적 확인과 관련된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생년월일, 개인정보항목, 경력, 투자이력사항 선택항목 : 근무처명, 팩스번호 등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투자 확인서						
투자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주소		⑥	전화번호	⑦	
투자기업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설립일		자본금			
	총발행주식수		액면가		업종	
	소재지(주소)					
투자명세표						
① 보유기간		② 주식수	③ 투자금액 (원)	④ 지분율	⑤ 비고	
투자일자~ 회수일자	기간					
계						
위와 같이 투자내역을 정히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주)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구하						
첨부서류						
① 투자계약서 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③ 주주명부(투자자 등재분)						

투자명세 작성요령

① 보유기간 작성(동일 회사 주식이나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주식의 종류가 다른 경우 각각
따로 작성)

② 인수한 주식수 기재

③ 투자금액 기재

⑥ 지분율 = 투자 주식수 ÷ 총 발행주수 × 100

⑦ 비고 : 주식의 종류(보통주, 우선주) 기재

* 투자금액은 인수할 당시 인수대금으로 작성

※ 작성대상 : 창업자,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으로 인수 후
1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한함

투자명세

① 보유기간		② 주식수	③ 투자금액 (원)	④ 지분율	⑤ 비고
투자일자~ 회수일자	기간				
2010.11.10~2011.12.10	1년1개월	1,000	10,000,000		보통주
2011.09.08~2013.12.08	2년3개월	2,000	10,000,000		우선주
계		3,000			

제 호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

성명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 규정에 의하여 전문엔젤투자자의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벤처투자(주) 인

210mm×297mm(특수용지 110g/m²)